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5. 6. 10.
- 라. 회부일자 : 2015. 6. 17.

2. 개정이유

-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4.12.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14.12.30.)에 따라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간사 규정방법을 직제명에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직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위원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나. 간사명 개정

- 간사를 “교육청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협 의 : 서울특별시와 협의 완료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 조례 개정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4055(2015.4.17.)]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개정관련 직제 변경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6121(2015.4.27.)]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개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4808(2015.4.30.)]

라. 기 타 :

○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3호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1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의 직제를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현행 “직제명”에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설명

○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1)에 의해 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치된 법정 단체로, 지난 2006년 12월 20일 같은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동 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 조문별 검토의견

- 동 조례안 제3조제3항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중 서울특별시의 직제를 “경영기획실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바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동 조례안 제8조에서 “정책기획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제명을 관련 규칙과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빈번한 직제변경에 따른 조례변경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영기획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직제명이 변경된 것은 2010년 9월 27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변경된 것도 2011년 12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바, 관련 법령 개정시 적시에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끝으로

○ 2007년 12월 20일 동 조례가 제정되면서 동 조례 부칙을 통해 최초 협의회는 2008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정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 단 한 차례의 협의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그 결과 동 조례는 그동안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 한편 2012년 5월 2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는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 개최된 바 있고²⁾,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기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³⁾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 법정단체인 교육행정협의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면,

서울특별시 주도의 비법정단체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해 온 것은 주무 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소관사무에 대한 소극적인 행태를 나타낸다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법정단체인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2012년 5월 17일에는 박원순시장과 광노현교육감이, 2014년 11월 17일에는 박원순시장과 조희연교육감이 각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